

# 학생회 규정 신·구 대조표 (2024.05.31.개정)

연 영	개 정 안	개정 사유
<b>제3장 선거</b>	<b>제3장 학생회 자치 기구 및 권한</b>	
<p><b>제17조</b>(학생회 각 부서의 부·차장 인준 및 임명)</p> <p><b>제18조</b>(학생총회)</p> <p><b>제19조</b>(대의원회)</p> <p><b>제20조</b>(집행위원회)</p> <p><b>제21조</b>(예산편성 요구)</p> <p><b>제22조</b>(결산)</p> <p><b>제23조</b>(규정의 제·개정)</p> <p><b>제24조</b>(의결의 자율성보장)</p> <p><b>제25조</b>(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</p>	<p><b>제10조</b>(학생회 각 부서의 부·차장 인준 및 임명)</p> <p><b>제11조</b>(학생총회)</p> <p><b>제12조</b>(대의원회)</p> <p><b>제13조</b>(집행위원회)</p> <p><b>제14조</b>(예산편성 요구)</p> <p><b>제15조</b>(결산)</p> <p><b>제16조</b>(규정의 제·개정)</p> <p><b>제17조</b>(의결의 자율성보장)</p> <p><b>제18조</b>(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</p>	<p>① '제3장 선거' 하위 조항 중 제17조~제25조까지는 학생회의 하위 자치 기구 및 학생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므로 해당 조항을 묶어 '제3장 학생회 자치 기구 및 권한'으로 독립함.</p> <p>② 각 조항의 내용은 변동 없으며, 제17조~제25조까지를 제10조~제18조로 수정함.</p>

연 영	개 정 안	개정 사유
<b>제3장 선거</b>	<b>제 4장 선거</b>	
<p><b>제10조</b>(선거관리위원회)</p> <p><b>제11조</b>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. 다만,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<b>제12조</b>(선거일 공고)</p> <p><b>제13조</b>(선거인 명부)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.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4조</b>(학생회장단 후보 등록)</p> <p><b>제15조</b>(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)</p> <p>② 선거인의 2/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.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 또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</p> <p><b>제16조</b>(선거관리규정) 이 규정의 선거관련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 4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.</p>	<p><b>제19조</b>(선거관리위원회)</p> <p><b>제20조</b>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<b>제21조</b>(선거일 공고)</p> <p><b>제22조</b>(선거권자 및 선거인 명부) 선거권자는 회장단의 임기인 2학기 시작일부터 다음해 2학기 시작 전일까지의 재학생인 1-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.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<b>제23조</b>(학생회장단 후보 등록)</p> <p><b>제24조</b>(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)</p> <p>② 선거인의 2/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</p> <p><b>제25조</b>(선거관리규정) 이 규정의 선거 관련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 5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.</p>	<p>① 선거 관련 조항을 '제 4장 선거'로 수정함에 따라 '제3장 선거' 하위 조항 중 제10조~제16조를 제4장 제19조~제25조로 수정함.</p> <p>② 제20조의 ③항에 선거관리위원의 중립 의무를 위하여 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 외에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함.</p> <p>③ 제22조는 선거인 명부와 관련하여 관례적으로 적용된 선거권자의 범위를 명시하기로 하며 조항명을 '선거권자 및 선거인 명부'로 수정함.</p> <p>④ 선거관리위원회의 학생자치 선거 규정 권고안 및 사회의 실제 우리나라의 선거법에 따라 제 24조의 ②항에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결선투표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함.</p> <p>⑤ 제25조는 선거관리규정이 '제5장'으로 수정됨에 따라 함께 수정함.</p>

연 영	개 정 안	개정 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장 선거관리규정</b></p> <p>제27조 (선거운동 기간) <del>개별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</del> <del>저로 한다.</del></p> <p>제28조 (선거 벽보) <del>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</del> <del>기호, 성명, 약력, 선전 구호, 공약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.</del></p> <p>제30조 (선거운동) <del>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.</del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5장 선거관리규정</b></p> <p>제27조 (선거운동 기간) <b>개별 선거 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여 공고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진행한다.</b></p> <p>제28조 (선거 벽보) <b>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 기호, 성명, 약력, 선전 구호, 공약,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.</b></p> <p>제 30조 (선거운동) <b>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다.</b></p>	<p>① 선거 관련 조항을 '제4장'으로 수정함에 따라 기존 '제4장 선거관리규정'을 '제5장 선거관리규정'으로 수정함.</p> <p>② 제27조는 7월에 이루어지는 선거의 특성상 6월 공고 및 입후보 등록 후 7월 정기고사 기간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관례를 고려하여 선거 공고에 따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수정함.</p> <p>③ 제28조는 선거 벽보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명시해야 함을 명시하여 초상권 등으로 인한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로 함.</p> <p>④ 제30조는 선거운동의 방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통일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함. 또한 1회에 한한 각 학급 순회 지지의 경우 합동 유세 등으로 인해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함.</p>

연 영	개 정 안	개정 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5장 학급 학생회 규정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6장 학급 학생회 규정</b></p>	<p>선거관리규정을 '제5장'으로 수정함에 따라 기존 '제5장 학급 학생회 규정'을 '제6장 학급 학생회 규정'으로 수정함.</p>

연 영	개 정 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'군산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'의 공포일(2018.02.07.)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'군산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'의 공포일(2018.02.07.)로 한다.</p> <p><b>제2조 이 규정은 공포일(2024.05.31.)부터 시행한다. (추가)</b></p>	<p>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포일을 추가함.</p>